

무배당  
**LIG암을이겨낸당신을위한암보험**(L14.04)



## 목 차

### 무배당 LIG 암을이겨낸당신을위한암보험(L14.04) 목차

|                             |    |
|-----------------------------|----|
| ◆ 개인신용 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 3  |
| ◆ 전국 고객센터 센터                | 4  |
|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5  |
| ◆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 7  |
| ◆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 11 |
| ◆ 자주 발생하는 민원(예시)            | 12 |
| ◆ 보험용어 해설                   | 13 |
| ◆ 가입자 유의사항                  | 14 |
| ◆ 주요내용 요약서                  | 17 |

#### 보통약관

|                       |    |
|-----------------------|----|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19 |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19 |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23 |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24 |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27 |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30 |
| 제7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 31 |
|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 32 |

#### 특별약관

##### 상해관련 특별약관

|                             |    |
|-----------------------------|----|
| 1.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갱신계약】        | 37 |
| 2.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갱신계약】 | 39 |
| 3. 일반상해80%미만후유장해 특별약관【갱신계약】 | 51 |
| 4. 상해수술비 특별약관【갱신계약】         | 53 |

|                                    |    |
|------------------------------------|----|
| 5.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II 특별약관【갱신계약】      | 54 |
| 6.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II 특별약관【갱신계약】  | 56 |
| 7. 골절진단비 II 특별약관【갱신계약】             | 58 |
| 8. 골절수술비 특별약관【갱신계약】                | 59 |
| 9.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갱신계약】              | 61 |
| 10.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갱신계약】             | 62 |
| 11. 화상진단비 특별약관【갱신계약】               | 64 |
| 12. 화상수술비 특별약관【갱신계약】               | 65 |
| 13.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갱신계약】           | 67 |
| 14.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갱신계약】          | 68 |
| 15. 자동차사고부상보장(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갱신계약】 | 71 |
| 16. 자동차사고부상보장(비운전자) 특별약관【갱신계약】     | 80 |

##### 질병관련 특별약관

|                              |    |
|------------------------------|----|
| 1. 질병사망(암유경험자) II 특별약관【갱신계약】 | 82 |
|------------------------------|----|

#####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                     |    |
|---------------------|----|
| 1. 김스치료비 특별약관【갱신계약】 | 83 |
|---------------------|----|

#####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                                         |    |
|-----------------------------------------|----|
| 1. 자동차사고성형비용(자가용) 특별약관【갱신계약】            | 84 |
| 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갱신계약】 | 85 |
| 3. 자동차사고 벌금(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갱신계약】        | 86 |
| 4.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갱신계약】        | 87 |
| 5. 중상해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갱신계약】    | 90 |
| 6.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갱신계약】                  | 92 |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                              |    |
|------------------------------|----|
| 1.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II 특별약관【갱신계약】 | 93 |
|------------------------------|----|

## 제도성 특별약관

|                                     |     |
|-------------------------------------|-----|
| 1.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      | 98  |
| 2.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                | 98  |
| 3.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 | 100 |
| 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 103 |
|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           | 103 |
| 5. 전자서명 특별약관 .....                  | 103 |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사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서면 : 135-5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사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사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lig.co.kr>

· 서면 : 135-5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사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lig.co.kr>

· 서면 : 135-5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사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사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코리아크레딧뷰로㈜ : ☎ 02)708-1000  
인터넷 [www.allcredit.co.kr](http://www.allcredit.co.kr)  
·한국신용정보㈜ : ☎ 1588-2486  
인터넷 [www.mycredit.co.kr](http://www.my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 : ☎ 1600-1533  
인터넷 [www.creditbank.co.kr](http://www.creditbank.co.kr)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불만사항 등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 1544-01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객지원 센터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

☎ 1544-0114 (지역번호 없이) (홈페이지: [www.lig.co.kr](http://www.lig.co.kr))  
● 사고접수 및 매직카 긴급출동 서비스 : 24시간 가능  
● 대출상담 문의 평일 09:00 ~ 20:00 [토, 일, 공휴일제외]  
● 계약조회, 변경, 해지, 기타상담 :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제외]

### 전 국 고 객 지 원 센 터

|          |                   |
|----------|-------------------|
| 강북고객지원센터 | 02) 3149-7000     |
| 광주고객지원센터 | 062) 222-1114     |
| 대구고객지원센터 | 053) 669-7114     |
| 대전고객지원센터 | 042) 259-3000     |
| 본사고객지원센터 | 02) 6900-2552~3,5 |
| 부산고객지원센터 | 051) 600-2141     |
| 수원고객지원센터 | 031) 547-3800     |

동봉된 증권과 약관 외에도 청약서 부분(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을 교부받으셨나요?

반드시 청약서 부분(계약자 보관용 청약서)과 영수증을 교부받으셔야 하며 청약서의 내용물 확인하시고 청약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서명 날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확립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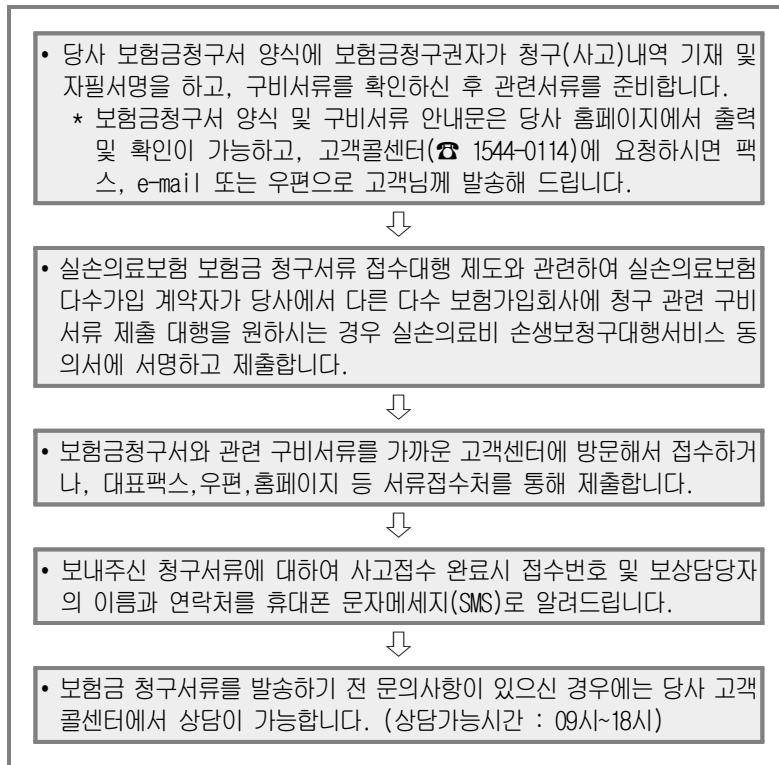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http://www.fss.or.kr)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귀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우편, 전화, FAX 및 인터넷([www.lig.co.kr](http://www.lig.co.kr))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 보험금 청구 절차 >



#### < 서류접수처 >

- 대표팩스 접수 : 대표팩스번호 0505-136-6500
  - 작성된 보험금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대표팩스번호로 보내주시면 『팩스접수증』을 고객님의 발송하신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
- 우편접수 : 우편접수 하시기 이전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해당 주소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접수 : [www.lig.co.kr](http://www.lig.co.kr)
  - 당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 서류접수를 하실 경우 구비서류를 파일첨부(JPG,TIFF) 또는 팩스로 전송해 주셔야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며, 금융회원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 방문접수 : 가까운 고객센터를 방문하시면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가까운 고객센터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방문시 보험금청구서(창구보관용)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제출확인증(보험금청구서 하단)을 절취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LIG손해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LIG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 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LIG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장해급부 청구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당사 요청에 의해서 장해 재심사(재진단)가 시행될 수 있으며, 비용은 LIG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 보험사간 치료비, 벌금, 배상책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배상책임 등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

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사계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의료비(벌금, 배상책임) 보험금에 대하여 환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접수 대행

- 2009.10.1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연대책임 조항이 신설·시행되고 있고,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개별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최초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받은 회사에서 다른 다수보험 가입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제도로써 회사간 의료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계약자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한 청구건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LIG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www.lig.co.kr](http://www.lig.co.kr))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재심사 청구

- LIG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LIG손해보험회사 민원담당부서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lig.co.kr](http://www.lig.co.kr))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접수 : 우편접수 하시기 이전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해당 주소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LIG손해보험 고객센터 : 1544-0114

##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각종 병원 의무기록자료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질병사고

#### ○ 공통 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당사 양식 |
|     |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     |
|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br>(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

#### ○ 의료비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입원  | • 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가능)<br>• 진료비영수증<br>• 진료비 세부내역서<br>(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br>• 초진기록지 (계약 후 3개월 이내 사고인 경우 필수, 단 담당자가 필요시별도 요청 가능)<br>• 초음파, MRI, 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 진료병원 |
| 통원  | • 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차트<br>•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필수)<br>* 카드 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br>• 초진기록지 (계약 후 3개월 이내 사고인 경우 필수, 단 담당자가 필요시별도 요청 가능)<br>• 초음파, MRI, 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 진료병원 |

#### ○ 진단금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암<br>(제자리암)           | • 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br>• 조직검사 결과지<br>• 암수술급여금: 수술기록지                                                                                                                                                                          | 진료병원 |
| 두번째암 II               | • 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br>• 조직검사 결과지<br>• 수술기록지<br>※ 재발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암세포의 제거여부를 확인시에는 『첫번째암』에 대한 “조직검사결과지와 “수술기록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번째암』에 대한 “조직검사결과지”와 “수술기록지”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첫번째암』의 암세포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료병원 |
| 2대질병<br>치료비<br>(뇌/심장) | • 진단서<br>• 검사결과지(특정질병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의)                                                                                                                                                                                     | 진료병원 |
| 특정질병<br>수술비           | • 진단서<br>• 수술확인서                                                                                                                                                                                                            | 진료병원 |
| 기타진단금                 | • 진단서(약관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진료병원 |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 사망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br>•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br>• 제적등본 (필요시 :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br>•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br>• 통장사본 | 진료병원<br>동사무소 |

#### ○ 신생아보장담보(저체중아육아비용/신생아입원일당)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신생아<br>보장담보 | • 출생증명서<br>• 입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반드시 기재) | -   |

○ 태아보험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태아보험 | • 산전기록지(계약상 출생예정일 기준 14일 이상 조기 출생한 경우) | -   |

## 2. 상해사고

○ 공통 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당사 양식 |
|     |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     |
|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

○ 사고증빙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산재사고 | • 산재요양신청서(서28호)<br>• 산재요양급여 확인원 (보험급여 결정통지서)<br>• 보험급여 원부<br>• 입퇴원확인서(30일 이상 입원시) | 근로복지공단<br>진료병원 |
| 폭행사고 |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            |
| 기타사고 | • 청구서작성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작성<br>• 초진기록지                                                | 진료병원           |

○ 의료비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입원  | • 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가능)<br>• 진료비영수증<br>•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br>• 초음파, MRI, 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 진료병원 |
| 통원  | • 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차트<br>•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필수)<br>* 카드 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br>• 초음파, MRI, 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 진료병원 |

○ 사망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br>•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br>• 제적등본<br>(필요시 :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br>•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br>• 통장사본 | 진료병원<br>동사무소 |

○ 후유장해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후유장해 | • 후유장해 진단서<br>※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종합) 병원 |
|      | ※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br>- 사지절단, 인공관절 치환수술건,<br>비장적출 수술건 | 진료병원      |
|      |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 진료병원      |

○ 기타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골절/화상          | •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화상 진단의 경우 심재성 여부 필수 기재)<br>• 수술시: 수술확인서 또는 수술기록지 | 진료병원        |
| 응급비용           | • 119구급(응급)이송확인서                                                              | 관할 소방서      |
| 학원폭력/강력범죄 피해보장 |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br>• 진단서                                                         | 경찰서<br>진료병원 |
|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 • 진단서<br>• 수술확인서(수술의 직경cm 확인 필요)                                              | 진료병원        |

### 3. 교통사고

#### ○ 공통 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당사 양식 |
|     |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     |
|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br>(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

#### ○ 의료비 및 입원일당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자동차보험<br>처리  | • 교통사고 처리확인서<br>(자사 자동차보험 처리時 생략가능)                                                                                   | 해당보험사       |
| 자동차보험<br>미처리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br>• 입(통)원확인서(진단명 필수 기재)<br>• 진료비영수증<br>•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br>•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제출(초진기록지) | 경찰서<br>진료병원 |

#### ○ 사망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사망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br>• 사망진단서(사체경안서)<br>•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br>• 제적등본<br>(필요시 :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br>•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br>• 통장사본 | 경찰서<br>진료병원<br>동사무소 |

#### ○ 후유장해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후유장해 | • 후유장해 진단서<br>※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종합)병원 |
|      | ※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br>- 사지절단, 인공관절 치환수술건,<br>비장적출 수술건 | 진료병원     |
|      |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 진료병원     |

#### ○ 기타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운전면허<br>정지보장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br>•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교육必後)<br>• 운전경력 증명서                                             | 경찰서<br>법원<br>면허시험장 |
| 운전면허<br>취소보장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br>• 면허취소 행정처분 확인원<br>• 운전경력 증명서                                                   | 경찰서<br>법원<br>면허시험장 |
| 자동차사고<br>벌금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br>• 약식명령서<br>• 벌금영수증                                                              | 경찰서<br>법원          |
| 교통사고<br>처리보장<br>(중상해 포함)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br>• 피해자 진단서<br>•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br>• 공소장<br>•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 경찰서<br>법원          |
| 자동차사고<br>변호사 선임<br>비용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br>•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 경찰서<br>법원          |

### 4.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어야 할 내용

#### 1.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 표준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6항에 의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제16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표준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표준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5항에 의거 규정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주소변경 통지

- 표준약관 제11조(주소변경통지)에 의거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4.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 표준약관 제39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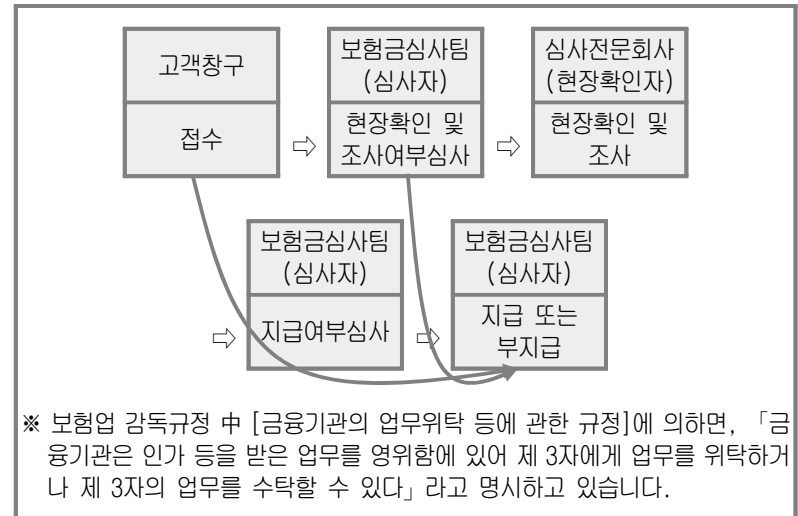
## 5. 주요 안내 내용

1.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2. 현장확인 대상건의 경우 LIG손해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www.lig.co.kr](http://www.lig.co.kr))
3. 보험금 청구시 문자서비스(SMS)로 각종정보(담당자 및 연락처, 제지금금 등)

를 제공하여 드리고, 상세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팩스나 이메일(전자우편) 발송에 동의하여 주시면 상세정보(제지금금, 각종안내, 보험금처리 진행과정 등)를 요청하신 방법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4.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LIG손해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LIG손해보험 콜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1544-0114)

## 6.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보장내용은 현재 판매하지 않는 담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 승낙 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표준이율 + 1%<br>(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반환기일 <sup>주1)</sup>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br>(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 계약 취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br>(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보험금                                                           | 지급기일 <sup>주2)</sup>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표준이율 <sup>주3)</sup> 의 50% |
|                                                                             |                                     | 1년 초과    1%                        |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 만기보험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br>1년 이내    표준이율 <sup>주3)</sup> 의 50% |
|       |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br>1년 초과    1%                    |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표준이율 <sup>주3)</sup><br>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보험료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일

주2) 지급기일

- 신채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 환급금 : 청구일부터 3영업일

주3)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적립이율은 “표준이율”을 “공시이율”로 적용합니다.

---

## 자주 발생하는 민원(예시)

---

### ○ 해약환급금 과소

- 민원 : 홍길동 계약자는 계약 후 1년경과 후에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
- 해설 : 보험계약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또 다른 일부는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과소

- 민원 : 홍길동 계약자는 보험가입 후 5년이 경과하여 중도인출을 일부 실시하였고, 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였을 때 환급금이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해설 : 중도인출은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인출하게 되는 금액으로 중도인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한후 부리, 적립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만기환급금(또는 해지환급금)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변동 관련

- 민원 : 홍길동 계약자는 가입당시 만기환급율을 99%로 설계하였으나, 실제 만기시 환급율이 88%로 감소됨에 따른 불만 제기
- 해설 : 적립부분 적용이율이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경우(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부리, 적립하게 됩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 지표금리 등에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변경

- 민원 : 홍길동 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직업을 변경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일반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은 것에 대

#### 해 불만 제기

- 해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적으로 사용하여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보험용어 해설

---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료**
  - 1)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 2)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보장개시일** :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15세미만 피보험자인 경우는 부활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행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갱신행 보장

- 회사는 갱신행보장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될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보장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회사는 갱신행계약에 대하여 갱신행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요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행보장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행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 암 관련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 보장에서 제외 됩니다.

###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C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C 관련 보장

- C관련보장은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찔려 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교통상해 관련 담보

-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하며,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토요일과 해당 법률상 관공서의 공휴일로 합니다.
- ‘운전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에서 말하는 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법령연계 관련 담보

- 법령에 연계하여 보장하는 담보의 경우(예 : 장기요양간병비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장합니다.
- 관련 법령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상하는 손해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장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어린이보험

- 피보험자가 만15세 미만에 사망시 보험계약은 소멸하며, 해당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 태아보험

-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로 합니다.
-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 각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실손의료보험 관련 담보

-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및 질병통원형 등 총 4개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담보종목 |    | 보상하는 내용                                         |
|------|----|-------------------------------------------------|
| 상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 통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 통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 (실손의료보험) 자동갱신 및 보험료 변동

- 실손의료보험은 위험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회사는 보험료 변경주기 만료 15일 전까지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만료일의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 ○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15년이며, 회사는 계약체결시 재가입 조건을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 당시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승낙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심사절차에 따라 승낙거절시에는 재가입 직

전의 가입조건(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

-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공제**

-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상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율(10%, 20%) 또는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재물손해,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공통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및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첫 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3.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4.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5. 계약의 무효(재물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6.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7. 계약의 소멸

#### 7-1) 계약의 소멸(화재손해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의 80%를 넘을 때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 7-2) 계약의 소멸(화재실손손해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 8.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9.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0. 중도인출

보장개시일부터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중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

청은 약관에서 정한 횟수로 제한됩니다.

#### 11. 계약전·후 알릴 의무

- 1)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2) 계약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셔야 합니다.

#### 12. 보험금의 지급절차(신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13. 보험금의 지급절차(배상책임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

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14. 보험금의 지급절차(재산손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15.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공통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 비용손해 및 배상책임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나. 장애: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상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を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두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지 급 금 액       |                |                |
|----------------------|---------------|----------------|----------------|
|                      | 최초계약          |                | 갱신계약           |
|                      | 가입후 2년미만      | 가입후 2년이상       |                |
| 두번째 암 진단비<br>(유사암제외) | 보험가입금액<br>50% | 보험가입금액<br>100% | 보험가입금액<br>100% |

② 제1항에서 『두번째 암』이라 함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첫번째 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organ)』(【별표2】(기관(organ)분류표) 참조)과 다른 『기관(organ)』에 『원발암』이나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암』을 말합니다. 다만,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첫번째 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고 그

후 진단확정된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암은 『두번째 암』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 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을 말합니다.

④ 제2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을 말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두번째 암』이라 함은 제5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의한 『암』을 말합니다.

#### 제4조(첫번째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의 『첫번째 암』이란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진단 받은 다음 각호의 질병을 말합니다.

1. 일반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2. 갑상선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갑상선암 이외의 유사암
  - 가. 기타피부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나. 제자리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 신생물(【별표3】(제자리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다. 경계성종양: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첫번째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청약일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첫번째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5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첫번째 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organ)』과 같은 『기관(organ)』에 진단확정된 경우
  2. 『첫번째 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organ)이 두개 이상(예: 『첫번째 암』이 위(stomach)와 간(liver)에 동시에 진단확정된 경우)인 경우 그 기관(organ)들과 같은 기관(organ)(들)(예: 위 및/또는 간)에만 암이 진단확정된 경우
  3. 『첫번째 암』으로 인하여 ‘중피성 및 연조직’ (【별표2】(기관(organ)분류표) 참조)에 침윤 또는 전이(metastasis)된 경우
  4. 『첫번째 암』으로 인하여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 (【별표2】(기관(organ)분류표) 참조)에 침윤 또는 전이(metastasis)된 경우
  5. 『첫번째 암』이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 (【별표2】(기관(organ)분류표) 참조)의 암(예: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등)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이 다시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8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야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5】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5】 참조)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보험료가 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보험의 「보장성-1304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적립한 금액(적립한 금액에서 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 「보장성-1304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보장성-1304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3. 보장성-130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를 적용합니다.
  4. 세부적인 보장성-1304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보장성-1304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 ⑥ 회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보장성-1304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회

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시합니다.

⑦ 계약자가 제39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5%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5%)로 부리됩니다.

#### 【사업방법서】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12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

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제14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2(병원등)의 규정에 의한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는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8조(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9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21조(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장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적립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최초 지정된 보험수익자(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이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감액 또는 증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제23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무효)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 계약일: 2014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 제24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통약관은 소멸되며 이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사망에 관한 세부규정】

이 보험에서 정하는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한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②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1년, 2년, 3년, 5년, 10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납입기간은 전기납으로 합니다.

### 【 예시 : 51세의 피보험자가 10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61세, 71세, 76세, 79세  
 - 71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10년보다 작아 5년으로 운용하고, 76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5년보다 작아 3년으로 운용하고, 79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작아 3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1년만기로 갱신합니다.

- ④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해 드립니다.
- ⑤ 제1항에 따라 자동 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26조(자동갱신 적용)

- ① 회사는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초 계약시의 보험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제도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1항의 갱신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 예시 : 40세의 피보험자가 10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계약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10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 50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30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60세 → 70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 구 분                  | 40세    | 50세    | 60세    | 70세     | ... | 비 고           |
|----------------------|--------|--------|--------|---------|-----|---------------|
| 계약보험료                | 5,000원 | 6,200원 | 7,600원 | 12,500원 | ... |               |
| 최초계약<br>보험료표         | 5,000원 | 6,500원 | 8,000원 | 10,000원 | ... |               |
| 첫 번째<br>갱신계약<br>보험료표 | 4,800원 | 6,200원 | 7,600원 | 9,500원  | ... | 나이증가<br>위험률인하 |
| 두 번째<br>갱신계약<br>보험료표 | 4,800원 | 6,200원 | 7,600원 | 9,500원  | ... | 나이증가          |
| 세 번째<br>갱신계약<br>보험료표 | 6,300원 | 8,000원 | 9,900원 | 12,500원 | ... | 나이증가<br>위험률상승 |
| :                    | :      | :      | :      | :       | :   |               |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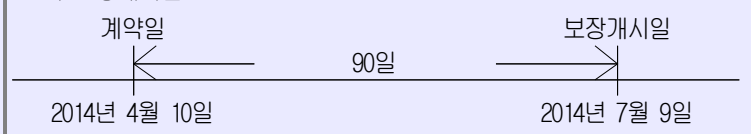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보장개시일>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⑥ 제1항의 보험료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 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 완료하고,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의해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 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갱신 일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3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1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계약의 성립)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하는 암(단, 분류번호 0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은 제외)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3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3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7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5】 참조)에 따릅니다.
- ③ 계약자가 제39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시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38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

- 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연체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1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39조(중도인출)

- ① 계약자는 보장개시일 부터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적립한 금액에서 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중도인출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 기준 매1년은 당해연도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입니다.

####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해지환급금이 100만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합계를 1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만원 = 70만원

### 제40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7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 제41조(적용대상)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제4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4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4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제44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45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4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4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 제4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48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49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5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5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52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회사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 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3.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제53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5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별표1】

####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C43~C44 |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0~C63 |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 C73~C75 |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 D46     |
|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 D47.1   |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 D47.3   |
| 20) 골수섬유증                         | D47.4   |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D47.5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별표2】 (기관(organ) 분류표)

아래 표의 “분류번호 예시”는 제 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년 1월 1일 시행)에서 명명된 각 개별 기관에 발생하는 악성신생물(암)을 예시 한 것입니다

| 개별 기관(organ) 분류                        | 분류번호 예시                          | 대분류                  |
|----------------------------------------|----------------------------------|----------------------|
| 1. 입술                                  | C00                              | 입술,<br>구강<br>및<br>인두 |
| 2. 혀(혀바닥, 혀의 기타 부위)                    | C01, C02                         |                      |
| 3. 잇몸                                  | C03                              |                      |
| 4. 입바닥                                 | C04                              |                      |
| 5. 구개                                  | C05                              |                      |
| 6. 기타 구강 부위 및 '입술, 구강 및 인두'내 기타 기관     | C06, C14                         |                      |
| 7. 귀밑샘                                 | C07                              |                      |
| 8. 기타 주침샘                              | C08                              |                      |
| 9. 편도                                  | C09                              |                      |
| 10. 인두(입인두, 비인두, 이상동, 하인두 포함)          | C10, C11, C12, C13               |                      |
| 11. 식도                                 | C15                              | 소화<br>기관             |
| 12. 위                                  | C16                              |                      |
| 13. 소장                                 | C17                              |                      |
| 14. 직결장(직장구불결장 이행부 포함) 및 '소화기관'내 기타 기관 | C18, C19, C20, C26<br>(C26.1 제외) |                      |
| 15. 항문 및 항문관                           | C21                              |                      |
| 16. 간 및 간내 담관                          | C22                              |                      |
| 17. 담낭                                 | C23                              |                      |
| 18. 기타 담도 부위                           | C24                              |                      |
| 19. 췌장                                 | C25                              |                      |

| 개별 기관(organ) 분류                                    | 분류번호 예시               | 대분류                   |
|----------------------------------------------------|-----------------------|-----------------------|
| 20. 비강 및 중이                                        | C30                   | 호흡기<br>및<br>흉곽내<br>장기 |
| 21. 부비동                                            | C31                   |                       |
| 22. 후두                                             | C32                   |                       |
| 23. 기관                                             | C33                   |                       |
| 24. 기관지 및 폐 및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내<br>기타 기관             | C34, C39              |                       |
| 25. 흉선                                             | C37                   |                       |
| 26. 심장, 종격 및 흉막                                    | C38                   |                       |
| 27. 뼈 및 관절연골                                       | C40, C41              | 뼈 및<br>관절<br>연골       |
| 28. 피부                                             | C43, C44              | 피부                    |
| 29. 중피, 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 부위, 후복막<br>및 복막, 기타 결합 및 연조직 | C45, C47,<br>C48, C49 | 중피성<br>및<br>연조직       |
| 30. 유방                                             | C50                   | 유방                    |
| 31. 외음                                             | C51                   | 여성<br>생식<br>기관        |
| 32. 질                                              | C52                   |                       |
| 33. 자궁(자궁경부, 자궁체부, 기타 자궁부위)<br>및 '여성 생식기관'내 기타 기관  | C53, C54,<br>C55, C57 |                       |
| 34. 난소                                             | C56                   |                       |
| 35. 태반                                             | C58                   |                       |
| 36. 음경                                             | C60                   | 남성<br>생식<br>기관<br>요로  |
| 37. 전립선 및 '남성 생식기관'내 기타 기관                         | C61, C63              |                       |
| 38. 고환                                             | C62                   |                       |
| 39. 신장, 신우 및 '요로' 내 기타 기관                          | C64, C65, C68         |                       |
| 40. 요관                                             | C66                   |                       |
| 41. 방광                                             | C67                   |                       |

| 개별 기관(organ) 분류           | 분류번호 예시                                                          | 대분류                                     |
|---------------------------|------------------------------------------------------------------|-----------------------------------------|
| 42. 눈 및 눈부속기              | C69                                                              | 눈, 뇌<br>및<br>중추<br>신경계                  |
| 43. 수막                    | C70                                                              |                                         |
| 44. 뇌                     | C71                                                              |                                         |
| 45. 척수, 뇌신경 및 기타 중추신경 부위  | C72                                                              |                                         |
| 46. 갑상선                   | C73                                                              | 내분<br>비샘                                |
| 47. 부신                    | C74                                                              |                                         |
| 48. 기타 내분비선               | C75                                                              |                                         |
| 49.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 | C81-C96,<br>C26.1, D45,<br>D46, D47.1,<br>D47.3, D47.4,<br>D47.5 | 비장<br>및<br>골수를<br>포함한<br>혈액<br>및<br>림프계 |

- 주1) 상기 분류번호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암의 경우 (C46, C76-C80, C97, U99), 회사는 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organ)' 을 병원 기록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를 통해 '기관(organ) 분류표' 에 있는 각 개별 '기관(organ)' 으로 분류합니다.
- 2) 상기 분류번호 예시 중 C44 와 C73에 해당하는 암인 경우,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3) 인체내에 두개 이상 존재하는 기관인 경우, 제 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서 같은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는 기관(organ)(예: 좌측 및 우측 유방, 신장, 고환, 폐, 요관, 난소, 부신, 눈, 부갑상선 등)은 같은 '기관(organ)' 으로 분류합니다.
- 4) 제 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분류번호 예시” 이외에 개별 '기관(organ)' 에 해당하는 분류번호가 새로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분류번호도 해당 '기관(organ)' 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두번째 암 보장 예시】

『첫번째 암』은 입인두암(C10)에서 진단확정되고, 그로부터 1년이후 비인두암(C11)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동일 기관(organ) 분류이기 때문에 『두번째 암』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후 비인두암(C11)이 전이되어 혀암(C00)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기관(organ) 분류이기 때문에 『두번째 암』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3】**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 4) 제자리 흑색종                | D03  |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8   |
|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9   |
|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   |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 D47.0 |
|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병증                              | D47.2 |
|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7.7 |
|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 D47.9 |
|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8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br>보장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br>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만기환급금<br>및<br>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br>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br>기간 | 1년 이내 : 표준이율의<br>50%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br>지급일까지의 기간           | 1년 초과기간 : 1%<br>보험계약대출이율 |

-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표준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상기 표준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 이율(공시이율 등)을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상해관련 특별약관

1.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중지 후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2.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 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별표】

##### 장해분류표

##### 총 칙

####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

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 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 10     |
|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5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우』)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애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애정도를 평가한다.
-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노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노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凹出)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 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45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15     |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6) 한 귀의 컷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 다. 컷바퀴의 결손

- 1) 『컷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컷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컷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3. 코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100    |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80     |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40     |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10     |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식으로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ㅋ, ㆁ)
  -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치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times 10\text{cm}$ (1/2 크기는  $40\text{cm}^2$ , 1/4 크기는  $20\text{cm}^2$ ), 6~11세의 경우는  $6 \times 8\text{cm}$ (1/2 크기는  $24\text{cm}^2$ , 1/4 크기는  $12\text{cm}^2$ ), 6세 미만의 경우는  $4 \times 6\text{cm}$ (1/2 크기는  $12\text{cm}^2$ , 1/4 크기는  $6\text{cm}^2$ )으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애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circ$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circ$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circ$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circ$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7. 체간골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 나. 장애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 8. 팔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4)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5)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 6)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10     |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나. 장애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는 장애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9. 다리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4)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10     |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애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10. 손가락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 마다)                          | 10     |
| 4)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30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 마다) | 5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뺏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11. 발가락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8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3      |

### 나. 장애판정기준

-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

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75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50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20     |

### 나. 장애의 판정기준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애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

는 경우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100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70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40     |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애로 발가락 하나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2) 정신행동

- ① 위의 정신행동장애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애는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가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CT),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정신장애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간병)의 내용에

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간병)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간병)를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애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 유 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
| 이동동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li> <li>-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li> <li>-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li> <li>-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li> </ul>                   |
| 음식물 섭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li> <li>-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li> <li>- 손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li> </ul>                               |
| 배변배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li> <li>-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li> <li>-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통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li> </ul> |

| 유 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
| 목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li> <li>-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li> <li>-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li> </ul>                                                  |
| 옷입고 벗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li> <li>-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li> <li>-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li> </ul> |

- 주) 1. 위 후유장애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애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애 지급률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 3. 일반상해80%미만후유장해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 80%미만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별표】(장해분류표)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별표 참조

#### 4.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상해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5.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II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클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6.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 II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 (【별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중환자실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를(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를(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별표】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측지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골절진단비II 특별약관【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골절분류표II)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골절진단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공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

골절분류표Ⅱ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br>(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 S02<br>(S02.5는 제외) |
| 2. 머리의 으깬손상                              | S07                |
|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 S09.9              |
| 4. 목의 골절                                 | S12                |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 13. 여러 신체부위의 골절                          | T02                |
| 14. 상세불명 척추 부위의 골절                       | T08                |
| 15. 상세불명 팔 부위의 골절                        | T10                |
|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 T12                |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8.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골절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전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

**골절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 2. 머리의 으깬손상          | S07   |
|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 S09.9 |
| 4. 목의 골절             | S12   |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 13. 여러 신체 부위의 골절     | T02   |
|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 T08   |
|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 T10   |
|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 T12   |
|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 T14.2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9.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 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5대골절진단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인하여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론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별표】

##### 5대골절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
| 1. 머리의 으깬손상          | S07         |
| 2. 목의 골절             | S12         |
|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S22.0~S22.1 |
|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 5. 대퇴골의 골절           | S72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10.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5대골절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별표】(5대골절분류표) -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별표 참조

### 11.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화상진단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별표】

### 화상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0  |
|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1  |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2  |
|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3  |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4  |
|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5  |
| 7. 눈 및 눈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6  |
|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7  |
|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8  |
| 10.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9  |
|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30  |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32  |
|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 L59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12.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화상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생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

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를(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를(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별표】(화상분류표) -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별표 참조

13.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다만,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시점에 만15세 미만일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7만원 고정)

| 구분   | 안면부          | 상지·하지                             |
|------|--------------|-----------------------------------|
| 지급금액 | 수술 1cm당 14만원 | 수술 1cm당 7만원<br>(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② 제1항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론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14.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통상해 80%미만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자가용, 영업용】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비운전자용】

1.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⑤ 제2항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을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⑩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 【실종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중지 후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나.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공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아래에 열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는 동안

#### 발생한 사고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론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별표 참조**

### 15. 자동차사고부상보장(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상해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구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부상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예시 |
|----------|----------------------------|---------|
| 1급       | 부상등급 I                     | 600만원   |
| 2 ~ 3급   | 보험가입금액300만원기준              | 300만원   |
| 4급       | 부상등급 II<br>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300만원   |
| 5급       |                            | 150만원   |
| 6급       |                            | 80만원    |
| 7급       |                            | 40만원    |
| 8 ~ 11급  |                            | 20만원    |
| 12 ~ 14급 |                            | 10만원    |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4.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

하 『6중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중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나.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제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1급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br>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br>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br>5.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br>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br>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br>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br>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br>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br>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br>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2급       |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br>5.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br>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br>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br>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br>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br>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br>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br>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br>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br>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3급       |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br>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br>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br>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br>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br>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br>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br>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br>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br>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 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br>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br>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br>8. 상완골 경부 골절<br>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br>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4급       |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지 골절을 말한다)<br>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br>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br>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br>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br>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br>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br>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br>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br>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br>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br>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5급       | 4. 안정성 추체 골절                                             |
|          |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          | 6. 상완골 간부 골절                                             |
|          |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
|          |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          | 11. 수근 주상골 골절                                            |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
|          |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 20. 슬개골 골절                                               |
|          |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
|          |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
|          |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
|          |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5급       |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6급       |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 4. 심장 타박                                                                       |
|          |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
|          |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
|          |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
|          |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
|          | 18. 요골 경부 골절                                                                   |
|          | 19. 척골 주두부 골절                                                                  |
|          |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6급       |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br>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br>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br>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br>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br>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br>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br>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br>5. 쇄골 골절<br>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 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br>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br>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br>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br>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br>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7급       |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br>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br>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br>17. 다발성 중수골 골절<br>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br>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br>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br>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br>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br>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br>3. 외상성 시신경병증<br>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5. 복합 고막 파열<br>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br>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br>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12. 중수골 골절<br>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8급       |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
|          |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
|          |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
|          |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5. 흉골 골절                                                  |
|          | 6. 추간판 탈출증                                                |
|          | 7. 흉쇄관절 탈구                                                |
|          | 8. 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1. 수지관절 탈구                                               |
|          |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9급       |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          |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
|          |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
|          |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          |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1. 뇌진탕                                              |
|          |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          |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
|          | 3. 척추 염좌                                            |
|          |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
|          |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          |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12급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br>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3급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br>2. 단순 고막 파열<br>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br>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br>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4급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br>2. 수족지 관절 염좌<br>3. 사지의 단순 타박<br>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br>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영역별 세부지침

| 영역 | 내 용                                                                                                                                                                                                                                                                                                                                                                                                                                      |
|----|------------------------------------------------------------------------------------------------------------------------------------------------------------------------------------------------------------------------------------------------------------------------------------------------------------------------------------------------------------------------------------------------------------------------------------------|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 (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br>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br>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항 또는 하항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항 또는 하항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항 조정 요인과 하항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항 또는 큰 폭의 하항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

| 영역   | 내 용                                                                                                                                                                                                                                                                                                                                                                                                                                                                                                                                                                                                                                                              |
|------|------------------------------------------------------------------------------------------------------------------------------------------------------------------------------------------------------------------------------------------------------------------------------------------------------------------------------------------------------------------------------------------------------------------------------------------------------------------------------------------------------------------------------------------------------------------------------------------------------------------------------------------------------------------|
| 공통   |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br>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 두부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혈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br>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br>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br>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br>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br>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br>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br>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
| 흉·복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

| 영역               | 내 용                                                                                                                                                                                                                                                                                                                                                                                                                                                                                                                                                                                                                                                                                                                                                                                                     |
|------------------|---------------------------------------------------------------------------------------------------------------------------------------------------------------------------------------------------------------------------------------------------------------------------------------------------------------------------------------------------------------------------------------------------------------------------------------------------------------------------------------------------------------------------------------------------------------------------------------------------------------------------------------------------------------------------------------------------------------------------------------------------------------------------------------------------------|
| 척추               | <p>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p> <p>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p>                                                                                                                                                                                                                                                                                                                                                                                                                                                                                                                                                                                              |
| 상<br>·<br>하<br>지 |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p> <p>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p> <p>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p> <p>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p> <p>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p> |

| 영역               | 내 용                                                                                                                                                                                                                                                                                                                                                                                                                                                                                                                                                                                                                                                        |
|------------------|------------------------------------------------------------------------------------------------------------------------------------------------------------------------------------------------------------------------------------------------------------------------------------------------------------------------------------------------------------------------------------------------------------------------------------------------------------------------------------------------------------------------------------------------------------------------------------------------------------------------------------------------------------|
| 상<br>·<br>하<br>지 | <p>가.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p> <p>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p>                                                                                                                                                                                                                                                                                                             |
| 상지               | <p>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p> <p>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p> <p>다.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p> <p>라.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p> <p>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p> <p>바.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p> <p>사.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p> <p>아.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

| 영역 | 내 용                                                                                                                                                                                                                                                                                                                                                                                                                                                                                                                                                                                                                                                         |
|----|-------------------------------------------------------------------------------------------------------------------------------------------------------------------------------------------------------------------------------------------------------------------------------------------------------------------------------------------------------------------------------------------------------------------------------------------------------------------------------------------------------------------------------------------------------------------------------------------------------------------------------------------------------------|
| 상지 | 자.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
| 하지 |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br>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br>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br>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br>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br>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br>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br>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br>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br>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br>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 16. 자동차사고부상보장(비운전자) 특별약관【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상해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구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부상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예시 |
|----------|----------------------------|---------|
| 1급       | 부상등급 I                     | 600만원   |
| 2 ~ 3급   | 보험가입금액300만원기준              | 300만원   |
| 4급       | 부상등급 II<br>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300만원   |
| 5급       |                            | 150만원   |
| 6급       |                            | 80만원    |
| 7급       |                            | 40만원    |
| 8 ~ 11급  |                            | 20만원    |
| 12 ~ 14급 |                            | 10만원    |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나.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제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별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자동차사고부상보장(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의 별표 참조

## 질병관련 특별약관

### 1. 질병사망(암유경험자)II 특별약관【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 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질병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지 급 금 액            |                     |                     |
|-------------|--------------------|---------------------|---------------------|
|             | 최초계약               |                     | 갱신보장특약              |
|             | 가입후 2년미만           | 가입후 2년이상            |                     |
| 질병사망(암유경험자)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② 제1항 및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첫번째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첫번째 암』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첫번째 암』이라 함은 청약일 전에 진단 확정되고 회사에 알린 보통약관 제4조(첫번째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고 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고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1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 1.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의 직접결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깁스(Cast)치료의 정의: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함. 단, 부목(Splint cast) 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 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론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 1. 자동차사고성형비용(자가용) 특별약관【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이하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애,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성형비용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제1항에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중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중 건설기계는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향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3. 자동차사고 벌금(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제1항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4.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

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1】(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              |            |
|-------------|--------------|------------|
| 42일~69일 진단시 | 70일~139일 진단시 | 140일이상 진단시 |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③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항의 한도로 지급합니다.

⑦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⑧ 제1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1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물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자가용운전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의 고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포함)
6. 계약자의 고의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별표1】(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자동차사고부상보장(자가용/영업용) 특별약관 별표 참조

#### 【별표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제1항·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 상기 외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5. 중상해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1】(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중상해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중상해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은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제2항의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퍼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중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중 건설기계는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⑦ 제1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1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자가용운전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의 고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포함)
6. 계약자의 고의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보장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별표1】(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별표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별표 참조

### 6.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이하 같습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법률비용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상합니다.
- ③ 제1항의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3조(보험금의 분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항,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 1.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특별약관【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장애(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 ④ 위 제2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애에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인배상책임』은 없음, 『대물배상책임』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인배상책임』 및 『대물배상책임』 손해를 더한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로 보상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의 ‘가’ 목, ‘나’ 목 또는 ‘마’ 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의 ‘다’ 목 또는 ‘라’ 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보장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이 계약이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부담)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으로써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6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재),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받는 일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8조(보험금의 부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9조(보험금의 청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접수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에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7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제18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1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제20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제2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 1.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상해관련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상해관련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상해관련 특별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④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상해관련 특별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상해관련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cc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cc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kW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등으로 결정합니다.

####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상해관련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3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상해관련 특별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관련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2.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 ① 계약자와 동일한 피보험자에 대해서만 이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 ③ 보통약관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 『사망보장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지급사유)

- ①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 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생

준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보통약관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⑥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사망보장특별약관의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2조(지급사유)의 제1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지정하거나 또는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수익자의대리인으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조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6.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7.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화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는 진단을 받지 않은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8조(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사망보장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3.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 제1조(특별약관 계약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별표1】(특정부위·질병 분류표III)중에서 다음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별표1-1】(특정부위 분류표III))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별표1-2】(특정질병 분류표III))

②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적용한 경우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내에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이 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⑦ 제1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을 합하여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갱신계약】 별표 참조

#### 【별표1】

#### 특정부위 · 질병 분류표Ⅲ

#### 【별표1-1】 특정부위 분류표Ⅲ

| 코드  | 특 정 부 위                                                |
|-----|--------------------------------------------------------|
| 201 |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
| 202 | 식도                                                     |
| 203 | 위, 십이지장                                                |
| 204 |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
| 205 | 대장(맹장, 직장 제외)                                          |
| 206 | 직장                                                     |
| 208 | 간                                                      |
| 210 | 췌장                                                     |
| 211 | 비장                                                     |
| 212 | 안구 및 안구부속기 [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
| 213 | 귀[외이(바깥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
| 214 |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
| 215 |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
| 216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

| 코드  | 특 정 부 위                            |
|-----|------------------------------------|
| 219 | 신장                                 |
| 221 | 요관, 방광 및 요도                        |
| 222 | 전립선                                |
| 225 | 유방(유선 포함)                          |
| 226 |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
| 228 | 질 및 외음부                            |
| 227 | 난소 및 난관                            |
| 224 |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
| 217 | 갑상선                                |
| 218 | 부갑상선                               |
| 229 |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
| 230 | 상·하악골(위턱뼈 · 아래턱뼈)                  |
| 231 |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
| 232 |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
| 233 |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
| 234 |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
| 235 | 쇄골                                 |
| 236 | 늑골(갈비뼈)                            |
| 237 | 왼쪽 어깨                              |
| 238 | 오른쪽 어깨                             |
| 239 |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
| 240 |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
| 241 |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
| 242 |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
| 243 | 왼쪽 고관절                             |
| 244 | 오른쪽 고관절                            |
| 245 |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
| 246 |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
| 247 |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
| 248 |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
| 207 | 항문                                 |

| 코드  | 특 정 부 위                                               |
|-----|-------------------------------------------------------|
| 209 | 담낭(쓸개) 및 담관                                           |
| 220 | 부신                                                    |
| 223 | 음경                                                    |
| 249 |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
| 250 | 자궁체부(자궁몸통)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별표1-2】 특정질병 분류표Ⅲ

| 코드  | 특 정 질 병           | 분류코드                                                                                        |
|-----|-------------------|---------------------------------------------------------------------------------------------|
| 301 | 담석증               | K80                                                                                         |
| 302 | 요로결석              | N20-N23                                                                                     |
| 303 | 척추질환              | M40-M43, M45-M51, M53-M54                                                                   |
| 304 | 결핵                | A15-A19                                                                                     |
| 305 | 하지정맥류             | I83                                                                                         |
| 306 | 골반염               | N73-N74                                                                                     |
| 307 | 연골증<br>관절증<br>관절염 | M00-M03<br>M05-M19<br>M93-M94                                                               |
| 308 | 심장질환              | I00~I02, I05~I09, I11, I13, I20~I25, I26~I28, I30~I52, I97, P29, Q20~Q26, R00-R01, R57, R93 |
| 309 | 뇌혈관질환             | I60~I69, G45~G46, Q28                                                                       |
| 310 | 고혈압질환             | I10~I13, I15, O11, O13, O14                                                                 |
| 311 | 당뇨(혈당치 상승 포함)     | E10-E14, O24, R73                                                                           |
| 312 | 고지혈증              | E78                                                                                         |
| 313 | 자궁내막증             | N80                                                                                         |
| 314 | 통풍                | E79, M10                                                                                    |
| 315 | 사시                | H49-H51                                                                                     |
| 316 | 백내장               | H25-H27                                                                                     |
| 317 | 탈장(음낭수종포함)        | K40-K46, N43                                                                                |
| 318 | 골다공증              | M80-M82                                                                                     |
| 319 | 복막의 질환            | K65, K66, K67                                                                               |
| 321 | 천식                | J44~J46, I50                                                                                |
| 322 | 바르클린샘의 질환         | N75                                                                                         |
| 323 | 암                 | -                                                                                           |

#### 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중 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8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제2조(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5. 전자서명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LIG 손해보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역삼동) LIG타워  
고객콜센터 1544-0114